

#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 05. 29 (목)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8. 06. 09 (월)
- 다. 상정일자 : 2008. 06. 09 (월) 제1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과장 : 신종해)

- 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

### 나. 주요골자

- 1)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토지취득 2건으로 그 상세내역을 보면,

#### ○ 토지매입

-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조성부지로 2006년 대관령면 차항리 244번지외 19필 107,084㎡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횡계리 347번지외 45필 44,604㎡를 취득코자 하며,
- 고길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 평창읍 고길리 237-10번지

1,28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재산리1443 외 1필(1,800㎡)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이후 추가로 발생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취득대상 재산을 보면,

-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조성부지매입**”은 지역여건상 고원에 위치하여 체력단련 및 전지훈련 적지로 연간 50여개팀, 연인원 약 2만여명의 체육인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적절한 훈련공간부재등의 사유로 여러가지의 적지않은 영향이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체육인들이 찾아오고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운동장, 육상트랙, 트레이닝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황계리 294-4번지 일원에 107,084㎡ 규모의 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황계리 347번지외 46필지 일원 62,480㎡를 감하여 44,604㎡로 변경 추진하려는 내용이며,
- “**고길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은 기존의 고길리 237-11번지 331㎡ 부지위의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기존의 부지(237-1)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고길리 237-10번지 1,283㎡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부지매입은 엘리트 체육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지

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되나, 적지 않은 예산소요가 불가피하며, 고길리 보건진료소는 기존의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로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자원조달과 효율적인 투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재경부 부지를 수십년간 임대 사용 해 오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검토해 볼 부분임.  | ○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음.                                  |
| ○ 부지매입비가 사업비의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설투자시 어려움이 우려됨.         | ○ 국도비등 추가확보에 노력하겠음.                                 |
| ○ 보건진료소 부지관련 일부지역은 지주의 회사를 받은 곳도 있는데 매입할 경우 형평성에서 문제 | ○ 지역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이 지역은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1부. 끝.

붙임)

## 2008.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08. 05.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토지취득 2건으로서

-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조성부지로 2006년 대관령면 차항리 244번지 외 19필 107,084㎡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횡계리 347번지외 45필 44,604㎡를 취득코자 하며.
- 고길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 평창읍 고길리237-10번지 1,282㎡를 취득코자 함.

## 3. 첨부자료

- 가.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1차 변경안 1부.
- 나. 예산조치사항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나. 관계법령 발췌 1부.

# 관계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예정가격에 있어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 시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1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